

의안번호	2206889
의 퇴 인	엄태영의원
회 답 일	2025.1.13
추계번호	24B626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관리하여야 함(제4항 신설)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수행할 수 있음(제5항 신설)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고, 품질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7항 신설)	재량규정
2	안 제35조의3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35조의6 신설 (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등)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위장·삭제·흐림처리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보안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함(제1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중 국방부장관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38조의2 신설 (권한의 위임·위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9조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 (미대상) 기본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중 ([참고자료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안 제35조의3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미대상) 보안심사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운영중 ([참고자료 2]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안 제35조의6 신설 (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38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상세 사유

□ 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등(안 제35조의6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성 검토를 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런데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의 보안성 검토 요청 건수 및 보안처리 건수 규모를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으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현재 국가 주도의 보안정보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보안성 검토 요청이 확대되더라도 동 체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현행 보안성 검토 실적은 [참고자료 2]에서 확인할 수 있음)
 - ①수탁기관에서 안보기관(국정원 등)의 승인을 받아 설치·운영하는 보안처리실(통제구역) 내에서 공간정보 보안대상·시설 확인(“보안성 검토”), ②보안실에서 보안대상·시설 보안처리(“보안처리”), ③수탁기관의 보안처리 결과 확인

□ 권한의 위임·위탁 등(안 제38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위탁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현재 업무 위탁의 범위와 방법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추계기간 동안 업무를 위탁하게 되는 기관, 해당 사무,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비용 및 비용지원의 규모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1] 기본공간정보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개념)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통합·활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적인 공간정보
- (법적 근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 하위규정 :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국토부 고시, '04년 제정, '24년 개정)
- (항목) 지형지물(도로·철도·하천 등), 경계(자연·인공·가상) 등에 관한 공간정보를 대분류 12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33개로 분류 (국토부 고시 '18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축기관
경계	행정구역	법정경계	국토교통부
		행정경계	행정안전부
	통계구	—	통계청
교통	도로	도로경계선, 도로경계면 도로노드, 도로링크, 인도	국토지리정보원
	도로시설	점형도로시설, 선형도로시설 면형도로시설	
	철도	철도경계면, 철도노드 철도링크	
	철도시설	점형철도시설, 면형철도시설	
해양	해양경계	해안선	국립해양조사원
	해저지형	수심	
수문	하천	하천경계, 실폭하천 하천중심선	국토지리정보원
	수로시설	수로시설	
지적	연속지적도	—	국토교통부
주소	도로명주소	—	행정안전부
지형	수치표고모형	—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육상지명	—	
	해양지명	—	국립해양조사원
위치기준	측량기준점	—	국토지리정보원
시설물	건물	—	
	건물중심점	—	
	건물시설	—	
영상	정사영상	—	국토교통부
시설	입체모형	—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관련 국토교통부 예산>

기본공간정보 분류	담당기관	'24년 예산	'25년 예산
도로(도로경계선, 도로경계면 도로노드, 도로링크, 인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502억원 (국가기본도 수정)	437억원 (국가기본도 수정)
도로시설(점형도로시설, 선형도로시설 면형도로시설)			
철도(철도경계면, 철도노드, 철도링크)			
철도시설(점형철도시설, 면형철도시설)			
하천(하천경계, 실폭하천, 하천중심선)			
수로시설			
건물			
건물중심점			
건물시설			
육상지명		3억원 (지명관리 및 국가지명위원회 운영)	3억원 (지명관리 및 국가지명위원회 운영)
측량기준점	국토교통부	17억원 (국가기준점 관리)	22억원 (국가기준점 관리)
정사영상		337억원 (국가공간영상정보 구축)	304억원 (국가공간영상정보 구축)
입체모형		77억원 (3차원 공간정보 구축)	80억원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수치표고모형			
행정구역(법정경계)	국토교통부	-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연속지적도		25억원(국비) (국비50%:지방비50%)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	30억원(국비) (국비50%:지방비50%)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3예산	'24예산	'25예산
합 계	15,549	17,782	14,469
①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 -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 - 국가공간정보포털(~'23)	7,645 3,243 2,687 1,053 662	7,946 3,995 2,898 1,053 -	7,713 4,523 2,585 875 -
② 지상·지하 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보화) - 국가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 구축 - 지상지하 공간정보 통합 - 공장인허가 시뮬레이션 서비스	4,135 3,231 904	6,392 2,494 201 3,697	2,067 2,067 - -
③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	600	600	600
④ 국가공간정보정책지원 - 공간정보산업육성	1,441	1,807	1,691
⑤ 공간 지식추론 엔진 (R&D)	1,728	1,037	2,128

[참고자료 2]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현황

공간정보관리기관	지정일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2022. 6. 15.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행정안전부	2023. 6. 1.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특별시	2023. 3. 10.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	2023. 5. 3.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보안 심사 건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건수/백만원)

관리기관	연도별	보안심사 건수				심사금액
		최초	정기	갱신	변경	
국토교통부	'22	2				4
	'23	5			2	28
	'24	11	8	2	1	52.8
서울시	'23	8	5			28.3
	'24	11	6	1		43.8
인천시	'23	4				10.6
	'24	9	3			32.4
합 계		50	22	3	3	199.9

- (정기심사) 매년 1회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갱신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갱신심사)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 (변경심사)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의 보안대책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 제6조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 사후관리(정기, 갱신, 변경 등)는 최초 보안심사 비용의 50% 적용

** 서울·인천시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없는 고해상 고정밀 공간정보를 자체적으

로 취득·관리하고 있어 공개제한 공간정보 수요가 발생

- ※ 행정안전부는 전문기관 지정 후 현재까지 정보 제공 신청이 없음